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에 따라, **'17. 10. 13.(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2.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방위사업청 장, 병무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새만금개발청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청장,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시장(공기업담당관), 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전략평가단장, 대구광 역시장(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 대전광역시장(창 조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 관), 평가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 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재정 점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최유선** 행정사무관 **송윤상** 공기업정책과장 **박제화** 전결 09/25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650 ( 2017.09.25. ) 접수 공기업담당관-12226 ( 2017.9.25.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4호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70 /전송 02-2100-3567 / yuseon@moi.go.kr / 대시민공개